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9
----------	-----

2020. 6. 9.(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이옥규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6월 9일

–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소속기관,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 미술품의 취득, 보존 및 관리 (안 제3조~4조)
- 재물조사 (안 제6조)
-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안 제7조)
- 사무의 위임, 세부기준 (안 제10조~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곽영학)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 안 제3조에서는 취득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미술품 보유현황 점검을,
 - 안 제7조에서는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손상된 미술품에 대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 안 제10조~11조에서는 사무의 위임과 세부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유산 보존과 지역 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 43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발의자	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0년 5월 29일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439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의자 : 이옥규,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연철흠, 정상교
박우양, 오영탁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소속기관,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 미술품의 취득, 보존 및 관리 (안 제3조~4조)
- 재물조사 (안 제6조)
-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안 제7조)

- 사무의 위임, 세부기준 (안 제10조~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입법예고 : 2020. 5. 20. ~ 2020. 5. 2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 ·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을 포함한다),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또는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취득) 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에 미술품 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 3. 작품의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주의를 할 것
-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것
-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A등급과 B등급의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4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 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도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도 소유 미술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재물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 결정을 한 미술품 중 소관전환 등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의 사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문화예술산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세부기준) 미술품 보관·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기준표

1. 가격 기준에 의한 분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백만원 이상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취득가격 50만원 미만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대장 (제5조 관련)

보유기관(부서)명:

(단위: 원)

구분 ①	관리 번호 ②	분류 등급 ③	작가명 ④	작품명 ⑤	크기 ⑥	취득 일자 ⑦	취득 사유 ⑧	작 품 가 액⑨			특기 사항 ⑩	상태 구분 ⑪	계시 (보관) 장소 ⑫	비고 ⑬
								취득 가격 1	추정 가격 2	감정 가격 3				
계														

※ 1. 부문별 코드에 의해 관리한다.

한국화(1), 서양화(2), 판화(3), 서예(4), 조각(5), 도자기(6), 사진(7), 공예품(8), 기타(9)

2.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등급은 등급분류 또는 작품 가격기준에 따라 A, B, C, D 4단계로 분류
4.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5.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6. 가로, 세로, 높이를 cm단위로 기재
7.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8.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표시
9. ⑨-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⑨-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⑨-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취득가격, 감정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0.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1.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2. 계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제3조 관련)

관리번호②				
구 분①			분류등급③	
작가명④			작품명⑤	
규격(크기)⑥	cm(가로) × cm(세로) × cm(높이)			
취득(기증)일자 및 취득부서(기증자)⑦				
취득사유⑧				
취득(감정)가액 (만원)⑨		특기사항⑩	예) 진품	상태⑪
보관(계첨)				
내역⑫				
비고⑬				
<u>사진</u>				
<u>○ 참고사항</u>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재정 · 회계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8. 불용품 중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미술품 취득 및 감정 또는 자문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와 미술품의 수복 등에 소요 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3조(취득)
- 안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 안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1년 미술품 취득, 수복 등 관련 **34,700천원** 정도 예상
- 추계의 전제 : 연중 1회
- 추계결과 :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 34,7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미술품 보관·관리 등 비용	168,800	30,000	34,700	34,700	34,700	34,700

【 비 용 추 계 서 】

(1년 소요비용 / 천원)

구 분	규 격	수 량	비 용	비 고
합 계			34,700	
미술품 취득	소계		30,000	
- 한국화, 서양화 등	70cm × 140cm등	20점	30,000	향토작가 작품구입
위원회 개최	소 계		1,500	
- 기본수당	9명	1회	900	감정 및 자문
- 출장여비	6명	1회	600	당연직(3명), 민간(6명)
미술품 수복	소 계		3,200	
- 상태조사	1명	1점	200	미술품의 상태점검
- 습식클리닝(오염제거)		1점	2,000	한국화 등 오염제거
- 액자교체		1점	1,000	
가격 재평가	소 계		3,000	1년 비용 제외
- 출장감정		2점	3,000	A,B등급 5년마다 실시

[참고]

* 미술품 취득 비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문화예술산업과 향토작가 작품매입	30,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 위원회수당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 미술품 수복 : 김겸 미술품보존연구소 자문